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72 발의연월일: 2022. 9. 15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득구·기동민

김교흥 · 김민석 · 김주영

신정훈 · 안규백 · 이명수

조정식 · 최인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,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런데 해당 특례의 도입 목적이 서울대학교병원, 사회복지법인,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(안 제74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	제74조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
금산입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금산입특례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	
대해서는 <u>2022년 12월 31일</u> 이	<u>2027년 12월 31일</u>
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	
「법인세법」 제29조를 적용하	
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	
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	
사업(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	
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	
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	
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	
업만 해당한다)에서 발생한 소	
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	
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